

제339회 임시회
2015. 4. 30.(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15년 4월 14일

다. 상정일자 : 2015년 4월 22일

○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실장 김장희)

가.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입·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150만원 한도) 만료기간을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간 연장

(안 제8조의 별표 2)

- '14. 12. 31 → '15. 12. 31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 시행 전('15. 1. 1.이후) 등록된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적용(부칙 안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맹정호)

-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주요 수입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등임.
- 동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12월31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면제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별표 2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제2호** 타목의 현행조문을 개정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 시 150만원 범위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채매입을 면제토록 하였고,
 - **부칙 제2조**에 2015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전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였음.
- 동 조례안은 소급 조항에 의해 금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전까지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환급액은 3월말 기준으

로 300대 가량, 약 7,200천원으로 추정되며, 세제혜택 기간 연장(1년)에 따른 기금의 실질 수입 감소액도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됨.

- 충북도는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촉진 정책에 따라 2009년 11월에 지역개발채권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다시 2013년 5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회 연장한 바 있음.
- 동 조례안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만료시점을 '1년'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타목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공채매입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 4. <생략>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